



# MINI Market Report

국가	일본
제품	선식 제품

주관사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CONTENTS

<b>I. 일본 통관 정보</b> .....	<b>1</b>
1. 관세 및 기타 세금 .....	1
2. 통관 절차 .....	2
3. 식품 수입 시의 규제 .....	7
<b>II. 일본 검역 정보</b> .....	<b>10</b>
<b>III. 일본 라벨링 정보</b> .....	<b>13</b>
1. 가공식품 라벨링 규정 .....	13
2. 관련 정책 .....	15

※ 참고자료

# 일본 통관 정보

## 1. 관세 및 기타 세금

### □ 관세율

- 선식류의 일본 HS CODE는 「1104.29.390」에 해당함

HS CODE	품목	기본세율	협정세율
1104.29.390	그 밖의 가공한 곡물 - 기타 곡물의 것	20%	17%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 기타 세금

- 소비세 (부가가치세)

- 국내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일본의 소비세는 다음의 국내 및 수입거래에 대해서 비과세인 일정 거래를 제외하고 과세되며 2014년 9월 현재 소비세율은 8% (지방소비세 1%를 포함)로 단일 세율임
- 국내거래란 국내에서 사업자가 사업으로서 대가를 얻어 행하는 자산의 양도 및 대출, 역무의 제공을 의미하며, 수입거래란 보세지역에서 인수되는 화물거래를 의미함
- 금융거래, 자본거래, 의료, 복지, 교육 분야의 일정 거래는 비과세이며, 수출거래나 국제통신, 국제운수 등의 이른바 수출 유사거래도 소비세가 면제. 국내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수입거래를 하는 자는 각각 정해진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단, 생산·유통 단계에서 이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매입에 대한 소비세를 매상에 대한 소비세에서 공제함
- 지난 2011년 9월에 취임한 전 재무상 출신 노다 요시히코 현 일본총리는 일본 국채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전체 GDP의 200% 가량) 이른바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세금 수입 증대를 추진해왔

음

- 기존 5% 였던 소비세율은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2단계에 걸쳐 상향될 예정

## 2. 통관 절차

### □ 수입통관의 흐름

- 수입항 도착 → 보세지역으로 화물반입 → 수입신고, 납세신고 → 세관에 의한 심사, 검사 → 관세 등의 납부 → 수입허가 → 보세지역으로부터 화물반출 → 수입자 화물 인수의 수순으로 이루어짐

### □ 수입신고

#### - 수입신고 시기

- 수입신고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이 보세구역 또는 특별히 허가받은 보세 구역 외의 장소에 반입된 후임
- 다만 특정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선박에 물품을 적재한 채 또는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기 전에 신고가 인정되고 있음

#### - 수입신고자

-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수입자를 대신하여 통관업자에 의한 대리 신고가 이루어짐

#### - 제출서류

- 수입신고는 통상, 수입(납세)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수입 부문의 품목별(예: 농수산물, 기계 등) 통관 담당 부문에 제출함

#### - 수입신고서 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반입서(Invoice)

- 선박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보험료 명세서
- 운임 명세서
- 포장 명세서

- 이 밖에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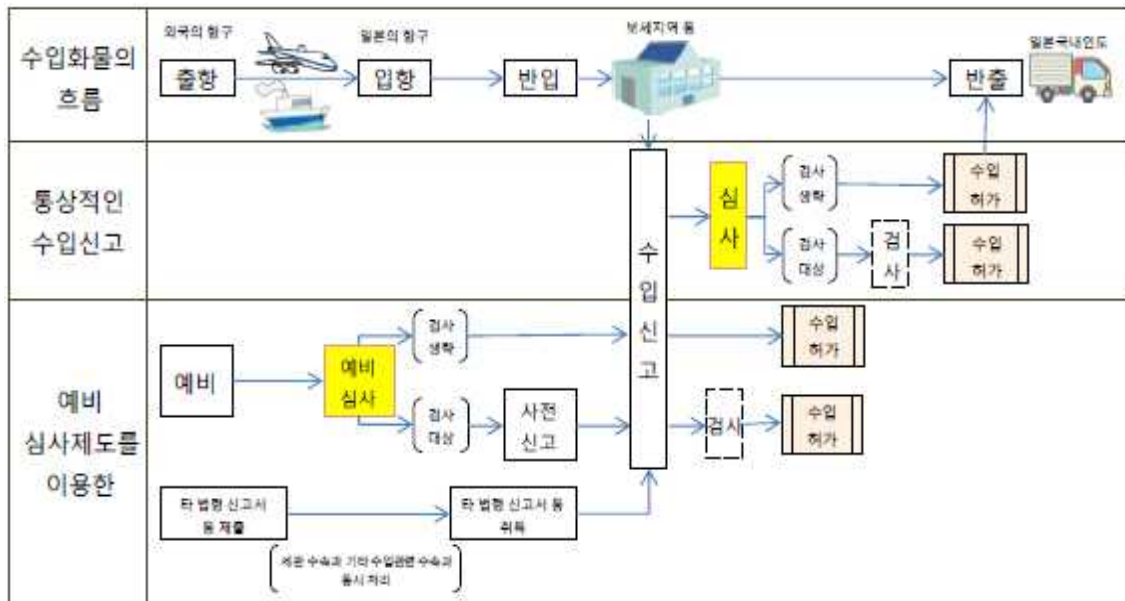
- 타 법령의 허가 및 승인증(식물방역법 등의 관세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한 허가 및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화물의 경우)
- 특혜 원산지 증명서(특혜 관세의 적용을 받을 경우)
- 감면세 명세서(감면세의 적용을 받는 경우)

□ 항만 물류 수입 절차

- 통관 위임 및 보세 지역에 반입

- 선박이 도착하면 선박 회사로부터 도착 통지(Arrival Notice)가 들어옴
- 수출자의 사전 선적 통지(Shipping Advice)가 들어오면, 수입자는 기용한 해운 화물 업자를 정하고, 수취, 통관 수속의 대행을 위임함
- 화환(貨換) 어음계산서 결제의 경우에는 인수 대금 결제 및 상환으로 은행에서 선하증권(B/L) 등 선적 서류를 입수, B/L은 승인을 하고, 해운 화물 업자에게 전달함
- 해운 화물 업자는 B/L 을 선박 회사에 제시하고 D/O (화물 통과 지시서)을 입수 하여, 이것과 상환으로 화물을 인수, 보세 지역에 반입함
- 만약 B/L이 은행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보증서 (L/G) 등을 선박 회사에 제시하여 짐을 일단 인수, B/L 도착 후 L/G와 교체하도록 함

< 일본 수입 절차 흐름도 >



출처 :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 통관과 화물의 국내 수령

- 해운 화물업자는 세관에 "수입(납세)신고서" 및 공급증명서 (Invoice), B/L, 보험 증권, 기타 법령 인허가 상품, 원산지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수입 신고를 함
- 필요한 세관 검사를 받고 관세와 소비세를 납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 허가를 얻은 후 이를 보세 지역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국내화물로 화물을 수령하게 되며, 보세 운송으로 다른 보세 지역에 전달하고 수입 신고 절차를 하는 경우도 있음
- 계절상품 등 신속한 수령을 희망하는 화물의 경우는 예비 심사 (도착 이전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에 심사 검사 필요 여부의 통지받는 제도) 및 수입 신고 시 담보를 제공하는 “수입 허가 전 수령 승인 제도” 를 이용할 수 있음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인증기관) 화물

- 화물 보안 관리 및 법령 준수 체제 정비가 우수 업체로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화물의 수령 후 소득 신고 등 빠르고 간결한 통관 (특례 수입 신고제도)이 가능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인정사업자제도, 기업이 물품관리 차

원에서 일정 이상의 보안을 확보하고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우수한 수출입업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며, 인정기업은 개별 통관수속보다 간소화된 심사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해당 제도가 상대방 국가와 상호 인정되면 수출입업자는 자국뿐만이 아닌 상대방 국가에서도 통관 수속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일본의 AEO 제도 >

제도	대상사업자	제도의 개요
특수수입 신고제도	일본의 수입자	화물 도착 전에 신고 및 허가를, 납세신고 전에 화물거래 등이 가능한 제도
특수수출 신고제도	일본의 수출자	화물이 보세지역 밖에 있어도 수출신고를 실시하고,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특정 보세 승인제도	창고업자	제출에 의한 새로운 보세장치장의 설치, 허가수수료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인정통관 사업자제도	통관업자	간단한 수속을 통해 외국화물 운송이 가능한 제도
특정 보세 운송제도	운송자 등	간단한 수속을 통해 외국화물 운송이 가능한 제도
인정제조자제도	제조자	인정제조자가 제조한 화물에 대해 화물이 보세지역 밖에 있어도 수출신고가 가능한 제도

출처 :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 일본 주요 세관 담당처

세관 명	전화번호	이메일
도쿄 세관	03-3529-0700	sodankan@tokyo-customs.go.jp
(관할지)	도쿄도, 치바현(이치카와시 일부), 야마가타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니가타현, 야마나시현	
요코하마 세관	045-212-6000	sodan@yokohama-customs.go.jp

(관할지)	카나가와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치바현(일부)	
나고야 세관	052-654-4100	gyomu-sodankan@nagoya-customs.go.jp
(관할지)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미에현	
고베 세관	078-333-3100	sodan@kobe-customs.go.jp
(관할지)	효고현, 톳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토쿠시마현, 카가와현, 에히메현, 코치현	
오사카 세관	06-6576-3001~5	sodan@osaka-customs.go.jp
(관할지)	오사카부, 교토부,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사가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출처 : KORTRA(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 통관업자에게 통관 수속 등을 의뢰했을 때의 요금

(단위: 엔)

통관업무의 종류		단위	요금
(1) 수출(반송) 신고		1건	5,900
	소액화물 간이 통관 취급	"	4,200
(2) 수입 신고	신고 납세(예비 신고 포함)	"	11,800
	소액화물 간이 통관 취급	"	8,600
	부과 과세	"	10,500
	소액화물 간이 통관 취급	"	7,800
	보세장치장 출고, 종합보세구역 총출고(가공, 제조, 전시품 제외)	"	7,000
	소액화물 간이 통관 취급	"	5,100
(3) 보세장치장 입고 신청		"	7,000
(4) 보세공장 이입 신청		"	7,000
(5) 보세전시장 장치장 등 승인 신청		"	7,000
(6) 종합보세구역 총입고 신청		"	7,000
(7) 수입허가 전 화물 인수 신청		"	5,100
(8) 외국화물선용품 적재 신고		"	5,100
(9) 외국화물 운송 신고		"	5,100
(10) 그 외의 신고 및 신청		"	1,300
(11) 제 신고 또는 허가승인서 사본 작성		"	200
(12) 할증료		"	요금의 50%

출처 : 일본 세관(<http://www.customs.go.jp>)



### 3. 식품 수입 시의 규제

#### - 포지티브 제도 실시

- 2005년 5월 29일 이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식품 중에 농약 등 규정 물질이 일정량 이상 잔류할 경우, 식품으로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제도가 설정되었음
- 포지티브 제도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는 1. 농약(농약단속법 1948년 법률 제82호 제1조의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 2. 사료 첨가물(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의 개선에 관한 법률 1953년 법률 제35호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농림수산성령에 규정된 사료에 첨가 혼합, 침투 등의 방법으로 첨부된 것) 3. 동물용 의약품 (약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의약품으로 동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성분)으로 그 성분이 과학적으로 변화 하여 생성한 물질들까지 포함
- 이들 중에서도 인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후생 노동성 대신이 결정하는 성분은 본 제도 이용의 대상에서 제외가 됨
- 포지티브 리스트에 없어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등이 허용되는 일정량은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임
- 식품위생법에 기반한 후생성 고지 제370호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에서 규정되어 있음(잔류농약 등에 관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 - 식품 및 식품 첨가물 규격 기준

- 식품위생법에 의해 ‘후생성 고지 제370호’에서 정하고 있는 성분 규격 및 제조방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수입판매가 불가능하며 동 규격이 적용되는 대상물은 식품, 음료, 식품첨가물은 물론 식품에 접촉이 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예: 식기, 식품 기계, 자동판매기 등), 유아용 장난감, 식품 및 식기류 세정제에 모두 적용이 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제26조 3항에 의거하여 전국 세관에서는 이하의 제품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전체 국가

- 복어 (어종 감별) 명란젓 (아질산근)
- 땅콩 및 그 가공품 (땅콩을 10% 이상 함유하는 것에 한함) (아플라톡신)
- 피스타치오 너트 (아플라톡신)
- 브라질 너트 · 자이언트 콘 · 아몬드 · 호두 · 칠리 페퍼 · 레드 페퍼 · 옥두구 및 율무 (아플라톡신)
- 혼합 향미료 & 믹스 너트 (아플라톡신)
- 시안 화합물 함유 콩류 (시안 화합물)
- 카사바 및 그 가공품 (전분 제외) (시안 화합물)
- 건조 무화과 (아플라톡신)
- 탄산수소 암모늄 및 이를 포함하는 식품 (멜라민)

○ 한국

- 돼지고기 (sulfadimidine)
- 활장어 (oxolinic acid)
- 뱀장어 및 그 가공품 (간이 가공에 한함, ofloxacin)
- 양식 넙치 및 그 가공품 (간이 가공에 한함) (oxytetracycline · enrofloxacin)
- 양식 넙치 및 그 가공품 (간이 가공에 한함) (kudoa septempunctata)
- 조개 및 그 가공품 (조개 관자만 있는 가리비 제외) (마비성 조개독 · 설사성 조개독)
- 생식용 피조개 (장염 비브리오)
- 생식용 키조개 (장염 비브리오)
- 가막 조개 및 그 가공품 (토막, 맛살에 한함) [엔도스루환]
- 방울 토마토 및 그 가공품 (간이 가공에 한함) [fluquinconazole]
- 파프리카 (점보 피망) 및 그 가공품 (간이 가공에 한함) [chlorpyrifos]

- 세이프가드(SG: Safeguard) 조치에 관한 감시체제 정비 (2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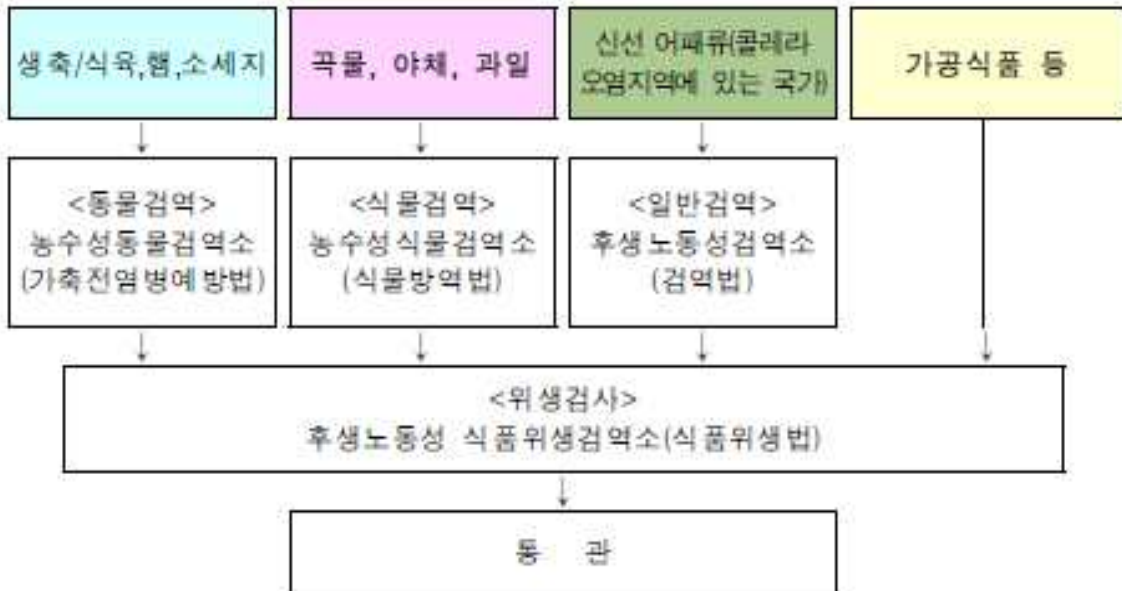
-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일본 국내 산업에의 피해 방지 차원에서 일본 정부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에 그 대상임 모니터링 대상은 수입국 전체이고 수입량이 많은 품목은 요주의 대상
- 농림수산성의 감시 대상 품목으로는 마늘, 가지, 가당(加糖) 조제품, 합판, 건표고 버섯, 가다랑어, 연어, 송어, 복어(이상 레벨1)가 있으며, 분기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 더욱 모니터링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레벨2)에 대해서는 긴급 감시 대상 품목으로 재지정하여 월 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파, 생표고버섯, 다다미, 토마토, 피망, 양파, 목재, 미역, 뱀장어(조제품 포함) 등이 있음(2013년 11월 현재)

## II 일본 검역 정보

### □ 검역 절차

- 일본의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검사기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음



출처 : 쌀 가공식품 수출전략 분석 및 수출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

- 일본으로 수입된 가공 식품과 검역을 필한 식품은 후생노동성의 식품위생검역소에서 수입식품 검사를 받아야 함

### - 일본의 수입식품 검사절차

#### ① 수입신고서의 제출

- 수입업자는 식품수입신고서를 식품위생검역소에 제출함

#### ② 수입신고서의 접수

- 식품위생검역소는 식품수입신고서를 수입식품 도착 7일전부터 접수하고 있음

#### ③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지 또는 검사가 필요한지를 심사함
- 서류심사의 결과가 문제가 없고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수입업자에게 신고필증이 교부됨

- 검사가 필요한 경우 소정의 검사절차를 거치게 됨

④ 검사

-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종 검사가 실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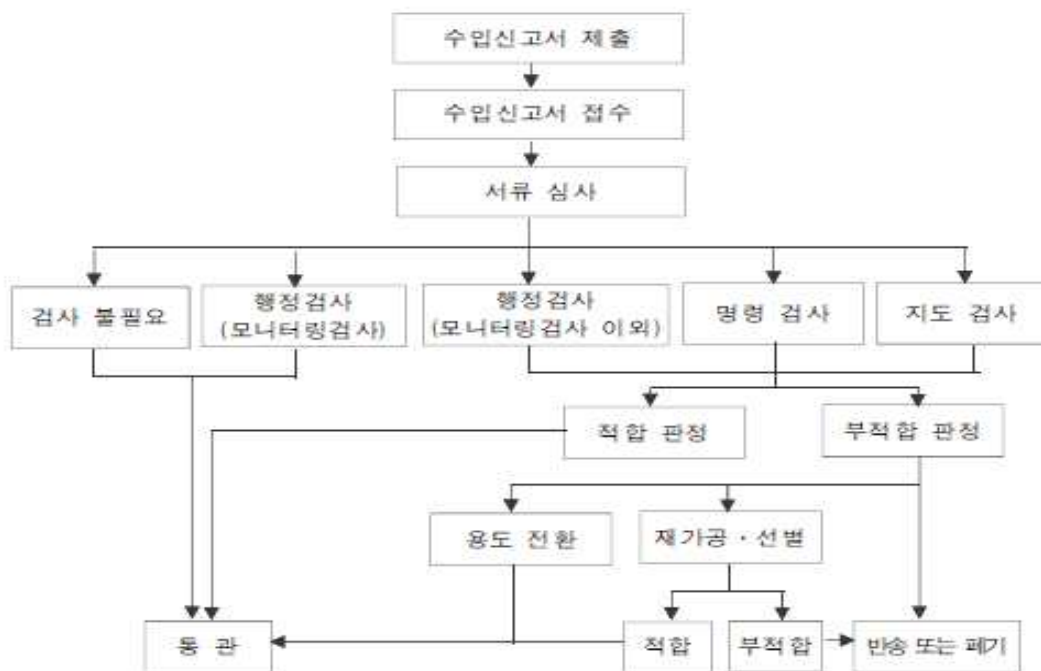
⑤ 검사 결과의 판정 후 절차

- 행정검사 중의 모니터링 검사의 경우 :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입업자에게 위반통지가 전달되고, 위반 물품이 이미 시장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의해 회수 및 폐기 조치됨
- 모니터링 검사 이외의 행정 검사 및 명령 검사의 경우 : 적합 판정 받으면 신고필증이 교부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입업자에게 위반내용이 통지되고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 조치되며 세관에도 위반식품 등이 수입되지 못하도록 통보함

⑥ 지도 검사의 경우

- 수입신고 시에 검역소에 수입업자가 실시한 분석실험결과를 제출하면, 검역소에서 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식품수입신고필증’ 을 교부함

- 일본의 수입식품 검사 프로세스



출처 : 글로벌윈도우 (www.globalwindow.org)

---

□ 제도

- 수입식품사전신고제도

- 모든 식품 등에 대하여 화물 도착 예정 7일전부터 식품 수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전 심사 후 검사가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 식품 사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화물 도착 전 또는 반입 후에 신속하게 수입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제도임

- 식품수입계획제도

- 특정 식품 한 수입계획서등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 맨 처음 수입 시에 제출한 수입계획서를(일부 식품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의 수입 실적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일정기간 동안 2번 째 수입부터 수입시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임
- 식품수입계획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식품의 경우에도, 이후 수입과정에서 식품 위생상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고의 내용을 기입한 '사고발생신고서' 를 검역소에 작성·보고 하여야 함

## III 일본 라벨링 정보

### 1. 가공식품 라벨링 규정

□ 가공식품 품질 표시 기준 : 식품표시법

- 현재 식품 표시에 대해서는 아래 3가지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3년 6월 28일에 「식품표시법」이 공포되어 2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
- 식품위생법 : 첨가물이나 알레르기 등 안전성에 관한 표시
  - 잔류농약 등의 규제에 대해 일정 이상의 농약 등이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 일본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있는 식품 첨가물이나 사용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 있고, 그 사용 여부 등에 주의를 요함
  - 수입 절차에 이용한 선행 샘플이 실제로 판매 영업 목적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과의 동일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수입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알레르기 표시제도 특정 원재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것)로 지정되어있는 품목을 포함하는 가공 식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표시가 의무
- 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JAS법)
  - : 원재료나 내용량 등 품질에 관한 표시
    - 일본 국내 판매 시에는 JAS법에 기반한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일괄 표시를 행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품에는 원산지(국가)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음
    - 유기농 식품은 유기 JAS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기”, “유기농” 등의 표시는 금지됨
    - 일본에서 수입 판매하는 경우는 일본의 법률 (표시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외국 제품의 용기 포장에 기재되어있는 표시 (원산지 법률에 따라 표시)를 일본어로

직역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함

- JAS 법외에도 식품위생법 (식품 첨가물, 저장 방법, 용기 재질 등의 규제), 계량법 (내용량, 성분 정렬 등의 규정), 경품 표시법 (마약 광고의 금지 등), 건강 증진법 (영양 표시 기준 등)도 각각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가공 식품 품질 표시 기준"에 따르면 대체로 다른 법령의 표시 (건강 증진법 제외)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건강증진법 : 열량이나 탄수화물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영양 성분 표시

- 건강 증진법은 영양 성분 또는 열량에 대한 표시하는 경우, "영양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가 의무화

#### □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국외의 제조자가 설정하는 기한 등을 기본으로 해당식품 등의 기한의 설정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제조자 등에게 확인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미생물 시험이나 이화학시험 및 관능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를 둔 적절한 기한을 설정하여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 기한을 표시해야 함
- 제조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경우는 년. 월. 일 로 표기하고, 3개월 이상은 년. 월로 표시

#### □ 품질표시 기준

- 상품 명칭을 표시
- 원재료 명을 총 중량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총중량에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에 물질명, 또는 보존료나 감미료 등의 경우는 "보존료(소르빈산K)", "감미료(스테비아)"와 같이 "용도명(물질명)"을 표시



## 2. 관련 정책

### □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경품 표시법)

- 과도한 경품 첨부 판매와 소비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과대 허위 표시 등이 금지되며, 또한 동법에 따라 “식품 표시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을 업계 자주 기준으로 작성

### □ 자원 활용 전략 / 용기 포장 재활용 법

- 유리병, 종이 용기, 플라스틱 용기 등은 의무적으로 분리수거 촉진을 위한 물자 식별 표시를 해야 하며, 특정 사업자(수입 포함)는 용기 폐기물 재상품화의 의무를 짐

### □ 가공 식품 품질 표시 기준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업무용도 대상이 되며, 용기 포장에 들어간 신선식품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모든 가공 식품에 공통적으로 표시해야 할 의무 표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품명, 종류별, 유형별 명칭 등을 기재
- 식품 첨가물 이외의 원재료와 식품 첨가물로 나눠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많은 것부터 표시
- 내용량 표기법에 따른 "특정 제품의 판매에 관한 계량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게는 그램 (g), 부피는 리터 (ml), 수량은 수량 단위로 기재
- 보관 온도는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 이외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없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지만, "직사광선을 피하고 상온에서 보관", "10℃ 이하로 저장하는 것", "개봉 후 필요 냉장" 등의 고려 사항이 있다면 필수 기재
- 제조업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유전자 재조합 DNA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대두와 옥수수, 감자 등 7개 품목 (대상 농산물)의 경우는 해당 원재료 명에 "유전자 재조합 부적 분별"로 표시해야 함

- 알레르기 식품 표시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과 우유 및 유제품의 성분 규격 등에 관한 성령”에 따라 특정 원재료 7 품목 (계란, 우유, 밀, 새우, 게, 메밀, 땅콩)을 포함하는 가공 식품에 표시 의무가 있음
- 한편,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18 품목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키위, 소고기, 호두, 연어, 고등어, 콩,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참마, 사과, 젤라틴)이 권장 품목으로 되어 있음

□ 자원유효이용 촉진법 등의 표시

- 용기포장 리사이클 법에 의해 분리 배출 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표시를 하도록 함

< PET병을 제외한 용기포장 >



< 음료, 주류, 간장 등의 PET병 >



□ 품질을 분간하기 위한 마크

- 나라가 정한 규격, 기준에 합격한 농림물(가공식품 이나 목재 등)에 표시할 수 있는 품질을 보증하는 마크임



---

※ 참고자료

- 관세청 :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일본 후생노동성 : [www.mhlw.go.jp](http://www.mhlw.go.jp)
- 일본 농림수산업성 : [www.maff.go.jp](http://www.maff.go.jp)
- 일본 세관 : [www.customs.go.jp](http://www.customs.go.jp)
- KOTRA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 KATI : [www.kati.net](http://www.kati.net)